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      |
|----------|------|
| 의안<br>번호 | 3139 |
|----------|------|

제 안 년 월 일 : 2025년 9월 9일

발 의 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시장이 2025년 5월 26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4)과 김경 의원이 2025년 8월 11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48)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제332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5. 9. 9.)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 이유

- 표창의 취소 시 공적심의회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공적심의회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어, 공적심의회 규정 조항을 명시하여 특정하고, 표창 대상을 현행화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표창권자 규정 내용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안 제4조).
- 나. 표창 취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표창 취소 시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다. 표창장 수여대상에서 최소 근무연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여 대상을 현행화 함(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이하 “표창권자”라 한다)는 다음과”를 “사람(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시 소속기관의 장(3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서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표창의 취소)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 취소 시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감사장의 취소는 공적심의회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표창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상장·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제1호 본문 중 “공적이 현저하며,”를 “공적이 현저한”으로 하고,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공무원 및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을 “우수한 시 소속기관, 자치구, 자치구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4조(표창권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자(이하 “표창권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 제4조(표창권자) -----<br>-- 사람(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                                |
| 1. 표창장, 상장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 소속기관의 장(3급 이상 및 소방서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2. 감사장 : 시장, 시 소속기관의 장                                                 | 2. 시 소속기관의 장(3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서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 < 신 설 >                                                                | 제6조의2(표창의 취소)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
|                                                                        | 1. 공적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                                                                        | 2.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
|                                                                        |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
|                                                                        | ② 제1항에 따라 표창 취소 시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감사장의 취소는 공적심의회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 ③ 표창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상장·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  
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제13조에 따른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등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3. 4. (생략)

제18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  
-----.

1. -----  
----- 공적이 현저한 -----  
공무원 및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단서 삭제>

2. -----  
우수한 시 소속기관, 자치구, 자치구  
소속기관

3. 4.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행세칙) ----- 필요한  
-----.